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8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개요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총괄적 검토	3
2. 개별 검토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 개정안 주요 내용]

소관	법률명	대상 자격·허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전문정비사업, 냉매회수업 등록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먹는샘물 제조·수입· 판매업자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
	물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 등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소관	법률명	대상 자격·허가
	소음·진동관리법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악취방지법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환경영향평가사
기상청 (1건)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 등록,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자격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¹⁾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

이러한 성년후견제로의 개편은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

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임.

[「민법」 상 행위능력 제도 변화]

종 전		개 정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그러나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검증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

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①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②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③ 직역의 특수성 및 공익과의 밀접성, ④ 유사한 직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각각 검토하기로 함.

2. 개별 검토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결격사유) -----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피성년후견인</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2)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

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적합 통
보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업무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
리 업무이므로 관련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
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건설폐기물법」 25조3)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

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
·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
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이하 “기사감정사 등”이라 함)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제7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4. (생략)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3. · 4. (현행과 같음)

(1) 기상사업자

기상사업은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⁴⁾),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기상사업자의 업무는 기상예보, 기상감정, 기상컨설팅, 기상장비 등 사업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⁵⁾에 따라 기상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기상예보사 등

현행법 제18조제1항6)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 등이 될 수 있음.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제도는 기상예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예보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격 제도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의 합격을 요구하는바 기상예보사의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보임.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3항7)에 따라 기상예보사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바(법 제20조8)), 간접적으로 사후 통

6)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 ⑤ (생략)

7)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8)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8.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전문정비사업자 및 냉매회수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안 제69조의2제1호, 안 제76조의11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69조의2(결격 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을 할 수 없다.	-----.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u>	<u>1. 피성년후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⁹⁾),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¹⁰⁾에 따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9)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11),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전문정비사업자의 업무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제1항1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¹³⁾),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냉매회수업자의 업무는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3¹⁴⁾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 못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냉매회수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4)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안 제24조제1호, 안 제43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제16조(결격 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u>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u> 2. ~ 6. (생략)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 ----- ----- -----. 1. ----- ----- ----- <u>피성년후견인일 때</u> 2. ~ 6.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⑥ ~ ⑬ (생략)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	--

(1) 환경영향조사대행자

환경영향조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먹는물관리법」 제15조¹⁵⁾),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 민간업자의 개발 행위들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취지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일정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면 업무 수행은 기술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17조¹⁶⁾에 따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15) 「먹는물관리법」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먹는물관련영업자

먹는물관련영업(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판매업자)을 하려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17)),

- 16) 「먹는물관리법」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 1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 ⑤ (생략)
-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먹는물관련영업은 단순 제조, 수입판매업 등의 사업으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48조¹⁸⁾에 따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8) 「먹는물관리법」 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 8의2. 삭제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¹⁹⁾),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먹는물수질검사는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검사 기관으로 그 업무가 기술적임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8항²⁰⁾에 따라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하 생략)

20)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⑧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폐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7제1호, 안 제6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38조의7(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63조(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²¹⁾),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²²⁾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폐수처리업자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²³⁾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업무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 등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²⁴⁾에 따라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검사 결

23)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제62조의2제3항²⁵⁾),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폐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5)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²⁶⁾),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시험·검사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확인,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등 업무로 기술적인 영역임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²⁷⁾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²⁸⁾),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등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28)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²⁹⁾에 따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제62조의2제3항³⁰⁾),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9)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확인검사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42조(결격 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자동차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³¹⁾),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확인검사대행업자의 업무는 동법 제38조제3항³²⁾에 따른 운행

31)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2)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료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의 개선 결과의 단순 확인 등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³³⁾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확인검사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3)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 2³⁴⁾),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시험기관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

3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고자 하는 기술적인 영역임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
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³⁵⁾에 따라 확인시험 방법, 검
사결과와 기록·보존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
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험
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
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악취방지법」 제16조의3³⁶⁾),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기관은 악취배출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구성 등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적인 영역임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36)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동법 제16조의4³⁷⁾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방법으로의 업무 수행·결과 보존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7) 「악취방지법」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결격사유) ----- ----- ----- ----- -----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³⁸⁾·제32조의2³⁹⁾),

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 재활용·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폐가스류처리업은 폐냉매 등을 인계하여 처리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40)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3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등록취소 등) 제34조(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營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2)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제23조(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지하수법」 제22조제1항⁴¹⁾),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시공업은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인바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41)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지하수법」 제25조⁴²⁾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2) 「지하수법」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13)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토양관련전문기관자치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위해성평가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누출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관련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⁴³⁾),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

다만, 동 기관은 환경평가, 위해성평가 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적인 영역임에 따라, 관련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면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동법 제23조의6⁴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에는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4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4)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나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결격 사유) ----- -----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u>피한정후견인</u>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⁴⁵⁾),

45)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⁴⁶⁾),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폐기물처리업 및 전용용기 제조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는 등 처리 업무, 그리고 일정한 구조·규격·품질을 갖춘 전용용기의 제조 업무 등 업무 성격이 기술적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⁴⁷⁾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정기적으로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27조⁴⁸⁾에 따라 적합성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4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48)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27조의249)에 따라 등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
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
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9) 「폐기물관리법」 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
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록한 전용용기 제조업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자나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하수도법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안 제19조의3제1호),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안 제20조의3제1호), 분뇨수집·운반업자(안 제48조제1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19조의3(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제48조(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u>전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하수도법」 제19조의 250)),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행 사업 등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하수도법」 제19조의4⁵¹⁾에 따라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

50)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51) 「하수도법」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하수도법」 제20조의2⁵²⁾),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기관은 하수처리시설에의 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등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적인 영역임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2)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동법 제20조의2제4항⁵³⁾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방법으로의 업무 수행·결과 보존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고,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하수도법」 제20조의4⁵⁴⁾),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분뇨수집·운반업자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하수도법」 제45조제1항⁵⁵⁾),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

53)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4) 「하수도법」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5)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등 기술적인 업무이므로,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하수도법」 제49조⁵⁶⁾에 따라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호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6) 「하수도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11. 삭제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또는 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항⁵⁷⁾), 그 외 사전 직무수행

57)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능력 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등 기술적인 업무이므로,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관련 영업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동법 제34조의258)), 영업허가의 취소(동법 제35조59)) 등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

58)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营业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9)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營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營業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을 삭제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 3. 31.>
 22. 삭제 <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7)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
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u>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u> <u>지 아니한 사람</u> 2. ~ 4. (생략)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제11조(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u> <u>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함)는 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사무, 피해인정·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법 제6조제1항60)), 중앙위원회 위원은 관련

6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관할한다.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 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 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환경분쟁의 제정(마목에 따른 제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 다.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제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제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있음(법 제9조제1항⁶¹⁾).

위원회의 업무는 전문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동법 제12조제2항⁶²⁾에 따라 장기간의 심심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중앙위원회 위원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 6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분보장)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심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5조제1호) 및 환경영향평가사(안 제63조제2항제1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55조(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⁶³⁾), 그 외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기술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에 따라 환경평가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63)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제63조제1항⁶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현황조사, 환경 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시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보임.

또한, 같은 법 제64조⁶⁵⁾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는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하는 등 일정 사항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제65조⁶⁶⁾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바,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

64)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5) 「환경영향평가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6